

#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3266호
- 나. 발의자 : 이희원 의원
- 다. 발의일자 : 2025년 10월 20일
- 라.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 II. 제안이유

- 동 조례 내용 중 인용조항에 오기가 있어 이를 정비하여 인용 조문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됨

### III. 주요내용

- 인용조항 오기 사항 수정(안 제9조~제10조)

##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28조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3. 입법예고 : 2025. 10. 28. ~ 11. 1.(의견: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이희원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266호로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인용조항에 오기가 있어 이를 정비하여 인용 조문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안 제9조제2항제7호는 제15조를 제7조로, 안 제10조제3항은 제2항제3호·제4호를 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1] 인용 오기 조항 내역

해당 조항	현행	오기 내용
제9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회의 설치)제2항제7호	제9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6. 생략 7. <u>제15조</u> 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8. 생략	제7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15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조항으로 인용 조항 오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제3항	① ~ ② 생략 ③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항제4호의 부재로 인용 조항 오기

- 현행 제9조제2항을 살펴보면, 제5호는 제5조(국제교류협력 계획의 수립)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계획의 수립, 제6호는 제6조(국제교류 협력 사업)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제7호는 '제15조(운영세칙)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인용 조항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현행 인용 조항인 ‘제15조’를 국제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제7조’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또한 위원 임기, 연임, 보궐위원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10조제3항은 제2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4호는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3항은 제2항 제1·2·3호 중 특정 위원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라 제2항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행처럼 특정 호를 인용하는 방식보다는, 제2항 전체를 인용하는 것이 조례 구조상 보다 타당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표-2] 국제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및 임기1)

### 위원회 구성

- (인원) 9인 이내 (※ 당연직인 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포함)
- (당연직) 부교육감(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위촉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 학교의 장 또는 학부모
  -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 임기

- 위촉직 위원 임기: 2년, 1차례 연임 가능 (단,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

- 이와 같은 인용 조항의 오기 수정은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 법적·행정적으로 의의가 있는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 없이 적합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3602, 2025.10.30.)

1) 2025년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위촉(안)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명신(2180-8269)
----------	----------------	-------	----------------